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운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16 발의연월일: 2021. 3. 4.

발 의 자:정운천·서일준·배준영

홍문표 • 권명호 • 김태호

하태경 • 박대수 • 하영제

김형동 · 서영석 · 김성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,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,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등의 행위는 하천관리청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음.

한편, 반려동물, 등록대상동물 등 여러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동물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는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, 등록대상동물 등을 위한 운동장, 공원 등의 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하천 주변 에 설치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·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 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,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 의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,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4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4항제3호 중 "행위"를 "행위(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·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①	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	4
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	
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	
서는 아니 된다.	,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	3
<u>행위</u>	- <u>행위(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</u>
	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
	위한 운동·휴식시설을 설치하
	는 행위는 제외한다)
4.•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